

## 학회지편집위원회 규정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정관 제 4 조에 의거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회지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칭함)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
제 2 조 (구성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정기간행물은 "Journal of the Korean Electrochemical Society" 를 지칭하며 이하 "국문지"로 부른다.
2. 위 원 장 1 명
3. 편집이사 10 명 내외

제 3 조 (위원장 및 편집이사 위촉)

1.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.
2.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.

제 4 조 (임기)

1. 위원장 및 편집이사의 임기는 2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임기는 당해연도 1 월 1 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.
2. 국문지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이사의 교체, 보완을 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3. 임기중 위원장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위촉하고 위촉에 의하여 취임한 위원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.
4. 임기중 각 편집이사의 해임은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집행할 수 있다.

제 5 조 (사업)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한다.

1. 국문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
2. 논문투고요령에 관한 사항
3. 논문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
4. 학술자료의 조사, 수집 및 교환
5. 기타 본 학회 학술 진흥과 국문지 발전에 관한 사업

제 6 조 (관리)

1.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
2.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3.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칙

제 7 조

이 규정은 199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8 조

이 규정은 2016 년 4 월 6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